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38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서영석·조승래·박상혁

이정문 · 강선우 · 인재근

임종성 · 고영인 · 이수진

최종윤 · 허종식 · 이해식

김성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 에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 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 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제5항, 제81조의2 및 제104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압류한"을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으로 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를 각각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로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체납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수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 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為)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 ① ~ ④ (생 략)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압류하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 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 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 | 류한-----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 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 <신 설> 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으로 확정

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 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 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 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 세 체납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제57조제 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 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징수금을 확정하 지 아니한 경우
-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 료법 |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 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제공) (현행 제81조의2 와 같음)

(현행 제81조의3과 같음)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생 략)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현행 제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생 략)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생 략)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공 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략)<신 설>

Q1	スら	1/01	같음)
\circ	ユニ	144	モロリ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다만, 공무원이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 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為)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

	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
	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
	<u>수한 재산</u>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
	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